

##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인지도 및 보건관리자의 평가

박수만\* · 정혜선\*\* · 이복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 구현, 규제완화,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규제완화, 구조조정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1997년 IMF 체제로 인해 기업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규제완화 정책은 현실로 구체화되었다.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은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1997년 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안전보건관계자의 의무선임규정이나, 직무교육 관련조항 등이 완화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었다. 이처럼 법적인 규정이 완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규제완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완화라고 하면 기업의 자유스러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경제적 규제완화를 뜻하는 것이지, 기업이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국민, 소비자, 근로자 등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동일시하여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되고 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은 기업주가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가 보다는 정부의 제도와 정책에 의한 규제에 의해 확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규제가 완화되어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충만해 있다면 정부가 규제라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보장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주들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고 있고, 따라서 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제완화 정책은 곧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에 산업재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1998년 현재 산업재해율은 0.68% 였으나, 2000년에는 0.73%로 산업재해 발생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산재율의 증가는 근로자의 건강에만 악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준다. 산업재해자의 발생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액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은 2000년 현재 7조 2백 8십 1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inistry of Labor, 2001). 이는 곧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완화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할 때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은 견지해 나가면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고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에 대한 대생각을 분석 함으로써 올바른 규제완화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의 올바른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인지도를 조사한다.

둘째,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평가를 살펴본다.

셋째,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인지도와 보건관리자 평가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보건관리자 중 산업간호사 751명, 산업의사 43명, 산업위생기사 65명 등 총 859명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 중 111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107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설문조사는 2000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2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6.1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된 변수의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고, 조건에 따른 변수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 test, Chi-square test,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1) 응답사업장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지역이 55.1%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을 포함한 경남지역이 18.4%였으며, 대구를 포함한 경북지역이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설립년도를 살펴보면 1970년 이후부터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이 53.3%로 가장 많았고, 1990년 이후 설립된 사업장이 21.1%, 1950년대 이후부터 1970년대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이 16.7% 이었다. 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이 73.6%로 가장 많았고, 기타의 사업<sup>1)</sup>이 17.9%,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이 4.7%,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3.8% 등이었다. 사업장의 규모는 50인-300인 미만이 39.8%로 제일 많았고, 300인-1,000인 미만이 37.9%로 나타났다.

#### 2) 응답보건관리자의 일반적인 특성

설문에 응답한 보건관리자는 여성이 65.0%이었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74.8%이었다. 평균 연령은 34.8세였으며,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51.5%로 가장 많았고, 30세 미만과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각각 22.8%이었으며, 50세 이상이 3.0%였다. 자격별 분포를 살펴보면, 간호사가 63.7%로 가장 많았고, 기타직종<sup>2)</sup>이 21.6%였으며, 산업위생기사와 환경관리기사가 각각 6.9%, 의사가 1.0%였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자가 46.6%, 대학재학 및 졸업자가 43.7%, 대학원 재학 이

1) 기타의 사업이란 농수산물위탁판매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 기타의 각종사업을 의미한다.

2) 기타 직종으로 응답한 보건관리자는 주로 현장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현장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로 주로 산업위생 및 환경관리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상자가 9.7%였다. 현 사업장 근무경력은 평균 6년으로 나타났고, 보건관리자로서의 총 경력은 평균 6년 3개월 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인지도

### 1) 전반적인 인지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보건관리자들의 인지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산업보건의 자율선임 등 자율고용으로 전환'에 대한 인지도가 평균 3.47점으로 가장 높았고,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검사의 완화'에 대한 인지도가 평균 2.13점으로 가장 낮았다. '소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규정 통합', '프레스·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검사 완화',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검사의 완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에 관해서는 평균 2.5점 이하의 점수로 '거의 모른다'에 가까운 인지도를 나타내었다(Table 1).

### 2) 보건관리자의 특성별 인지도

#### (1) 보건관리자의 근속년수별 인지도

'산업보건의 자율선임 등 자율고용으로 전환'(p<0.0001), '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 허용 확대'(p<0.05),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고용의무 완화'(p<0.05), '동일 산업단지 내 공동채용 확대'(p<0.001), '보건관리대행 대상 사업장 확대'(p<0.001), '안전·보건 관리자 등의 보수교육 면제'(p<0.001)에 대한 인지도와 근속년수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즉, '근속년수가 길수록 위 사항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혹은 '인지도가 높을수록 근속년수가 길다'고 할 수 있다(Table 2).

#### (2) 보건관리자의 직급별 인지도

<Table 1> Awareness on the deregulation of occupational health

item	score
voluntary employment of occupational health doctor	3.47
admitting the additional job of occupational health(safety) manager	3.19
deregulate appointment of health(safety) manager	3.27
deregulate presidential decree qualification of the safety manager	2.96
having one health manager jointly in the same industrial complex	3.08
expand cover range of group occupational health agencies.	3.33
integrate the health and safety related law	2.17
deregulate prohibition of contract for harmful work	2.38
deregulate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 manager	3.36
deregulate periodic inspection of press etc.	2.32
deregulate additional inspection of facility for liquefied petroleum gas etc.	2.13
deregulate submission of harm and danger prevention plan	2.28

<Table 2> Awareness on the deregulation of occupational health by length of employment

item	r	p
voluntary employment of occupational health doctor	0.4366	0.0001***
admitting the additional job of occupational health(safety) manager	0.2139	0.0364*
deregulate appointment of health(safety) manager	0.2108	0.0403*
deregulate presidential decree qualification of the safety manager	0.1459	0.1583
having one health manager jointly in the same industrial complex	0.2957	0.0034**
expand cover range of group occupational health agencies.	0.2927	0.0038**
integrate the health and safety related law	0.0097	0.9259
deregulate prohibition of contract for harmful work	- 0.0451	0.6640
deregulate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 manager	0.2675	0.0084**
deregulate periodic inspection of press etc.	- 0.0551	0.5979
deregulate additional inspection of facility for liquefied petroleum gas etc.	0.0368	0.7231
deregulate submission of harm and danger prevention plan	0.0664	0.5224

\* p<0.05 \*\* p<0.01 \*\*\* p<0.001

보건관리자의 직급을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 축탁직, 임시직, 기타 직급)으로 구분하였을 때, '산업보건의 자율선임 등 자율고용으로 전환',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고용의무 완화', '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 허용 확대', '2종 이상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겸직 허용', '동일 산업단지 내 공동채용 가능', '보건관리대행 대상 사업장 확대' 등과 같이 고용과 관련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인지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 규정 통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등과 같이 직무에 관한 내용은 정규직의 인지도가 더 높았다 <Table 3>.

### (3) 보건관리자의 학력별 인지도

모든 규제완화 항목에 대해 학력수준이 높을 때 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

허용 확대'(p<0.05),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고용의무 완화'(p<0.01), '동일 산업단지 내 공동채용 가능'(p<0.01), '소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 규정 통합'(p<0.05) 등 일부항목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보건관리자는, 대부분의 규제완화 항목에 대해 평균 4.0점(잘 안다)에 가까운 응답을 하였으나, '프레스·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검사 완화',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검사의 완화' 등 안전관리에 관한 항목에서는 평균 2.0점(거의 모른다)에 가까운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Table 4>.

### 3) 사업장 특성에 따른 인지도

#### (1) 사업장 업종별 인지도

'2종 이상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겸직 허용'에 관해서는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관리

<Table 3> Awareness on the deregulation of occupational health by type of employment

item	regular	irregular	t	p
voluntary employment of occupational health doctor	3.20	3.52	-1.7359	0.0858
admitting the additional job of occupational health(safety) manager	2.97	3.24	-1.1423	0.2562
deregulate appointment of health(safety) manager	3.01	3.38	-1.8344	0.0698
deregulate presidential decree qualification of the safety manager	2.77	3.10	-1.3403	0.1834
having one health manager jointly in the same industrial complex	2.83	3.24	-1.8730	0.0641
expand cover range of group occupational health agencies.	3.05	3.62	-2.972	0.0037**
integrate the health and safety related law	2.27	1.90	1.9256	0.0572
deregulate prohibition of contract for harmful work	2.37	2.19	0.9366	0.3514
deregulate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 manager	3.17	3.10	0.3518	0.7258
deregulate periodic inspection of press etc.	2.35	2.24	0.5255	0.6005
deregulate additional inspection of facility for liquefied petroleum gas etc.	2.17	2.05	0.6000	0.5499
deregulate submission of harm and danger prevention plan	2.33	2.10	1.0555	0.2939

\*\* p<0.01

<Table 4> Awareness on the deregulation of occupational health by education

item	college	university	graduate	F	p
voluntary employment of occupational health doctor	3.23	3.18	3.80	2.88	0.0607
admitting the additional job of occupational health(safety) manager	2.89	3.02	3.80	4.21	0.0176*
deregulate appointment of health(safety) manager	3.00	3.05	3.90	5.76	0.0043**
deregulate presidential decree qualification of the safety manager	2.74	2.91	3.20	1.04	0.3570
having one health manager jointly in the same industrial complex	2.79	2.84	3.80	5.90	0.0038**
expand cover range of group occupational health agencies.	3.19	3.05	3.60	2.03	0.1367
integrate the health and safety related law	1.98	2.32	2.60	3.81	0.0256*
deregulate prohibition of contract for harmful work	2.28	2.39	2.67	0.94	0.3925
deregulate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 manager	3.00	3.18	3.60	2.09	0.1289
deregulate periodic inspection of press etc.	2.17	2.56	2.20	2.31	0.1044
deregulate additional inspection of facility for liquefied petroleum gas etc.	2.02	2.26	2.10	0.86	0.4255
deregulate submission of harm and danger prevention plan	2.15	2.40	2.40	0.92	0.4034

\* p<0.05 \*\* p<0.01

자의 인지도가 평균 3.80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의 산업 종사자 인지도가 평균 2.37점으로 가장 낮았다 (p<0.01). '소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규정 통합'(p<0.01),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시정지시 등의 완화'(p<0.01), '프레스·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검사 완화'(p<0.0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p<0.05) 에 대해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종에 있는 보건관리자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는 보건관리자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Table 5>.

(2) 사업장 규모별 인지도

전반적으로 사업장의 규모는 보건관리자의 인지도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즉, 사업장의 규모가 큰 곳의 보건관리자는 규제완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고용의무 완화'(p<0.05), '동일 산업단지 내 공동채용 가능'(p<0.05), '소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규정 통합'(p<0.05),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시정지시 등의 완화'(p<0.0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p<0.05) 규정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인지도가 높았다<Table 6>.

(3) 사업장 노조 유무별 인지도

'산업보건의 자율선임 등 자율고용으로 전환'(p<0.001), '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 허용 확대'(p<0.01),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p<0.05), '보건관리대행 대상 사업장 확대'(p<0.05), '안전·보건 관리자 등의 보수교육 면제'

<Table 5> Awareness on the deregulation of occupational health by industry

item	manufac turing	electric etc	transport ation etc	others	F	p
voluntary employment of occupational health doctor	3.21	3.80	4.00	3.21	2.33	0.0794
admitting the additional job of occupational health(safety) manager	3.03	3.80	3.75	2.79	2.50	0.0641
deregulate appointment of health(safety) manager	3.09	3.80	3.75	2.94	2.34	0.0780
deregulate presidential decree qualification of the safety manager	2.89	3.80	3.50	2.37	4.20	0.0077**
having one health manager jointly in the same industrial complex	2.84	3.60	3.75	2.79	2.37	0.0747
expand cover range of group occupational health agencies.	3.12	3.60	3.75	3.05	1.42	0.2424
integrate the health and safety related law	2.28	2.20	3.00	1.74	4.21	0.0076**
deregulate prohibition of contract for harmful work	2.41	2.60	3.25	1.89	4.48	0.0055**
deregulate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 manager	3.15	3.00	4.00	3.00	1.59	0.1978
deregulate periodic inspection of press etc.	2.45	2.40	2.75	1.83	2.81	0.0437*
deregulate additional inspection of facility for liquefied petroleum gas etc.	2.20	2.60	2.25	1.72	2.18	0.0947
deregulate submission of harm and danger prevention plan	2.35	2.60	3.00	1.78	3.24	0.0255*

\* p<0.05 \*\* p<0.01

<Table 6> Awareness on the deregulation of occupational health by size of industry

item	r	p
voluntary employment of occupational health doctor	0.1594	0.1133
admitting the additional job of occupational health(safety) manager	0.1509	0.1340
deregulate appointment of health(safety) manager	0.2099	0.0371*
deregulate presidential decree qualification of the safety manager	0.1448	0.1528
having one health manager jointly in the same industrial complex	0.2267	0.0234*
expand cover range of group occupational health agencies.	0.2106	0.0355*
integrate the health and safety related law	0.2061	0.0407*
deregulate prohibition of contract for harmful work	0.2379	0.0177*
deregulate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 manager	0.1884	0.0604
deregulate periodic inspection of press etc.	0.0416	0.6840
deregulate additional inspection of facility for liquefied petroleum gas etc.	0.1021	0.3146
deregulate submission of harm and danger prevention plan	0.3056	0.0021**

\* p<0.05 \*\* p<0.01

<Table 7> Awareness on the deregulation of occupational health by labor union

item	yes	no	t	p
voluntary employment of occupational health doctor	3.47	2.82	4.4099	0.0000***
admitting the additional job of occupational health(safety) manager	3.21	2.68	2.8831	0.0048**
deregulate appointment of health(safety) manager	3.23	2.88	2.0664	0.0413*
deregulate presidential decree qualification of the safety manager	2.97	2.62	1.7673	0.0802
having one health manager jointly in the same industrial complex	2.99	2.71	1.4575	0.1481
expand cover range of group occupational health agencies.	3.26	2.91	2.0841	0.0397*
integrate the health and safety related law	2.13	2.35	-1.3598	0.1769
deregulate prohibition of contract for harmful work	2.33	2.41	-0.4718	0.6381
deregulate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 manager	3.26	2.88	2.1208	0.0364*
deregulate periodic inspection of press etc.	2.25	2.53	-1.5338	0.1282
deregulate additional inspection of facility for liquefied petroleum gas etc.	2.07	2.26	-1.0923	0.2773
deregulate submission of harm and danger prevention plan	2.19	2.47	-1.5036	0.1358

\* p<0.05 \*\* p<0.01 \*\*\* p<0.001

(p<0.05) 항목에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 3.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평가

#### 1) 전반적인 평가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평균 2.5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하여 '약간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 허용 확대'에 관하여 평균 1.76점으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고용의무 완화'(평균 1.82점),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보수교육 면제'(평균 1.87점),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시정지시 등의 완화'(평균 1.94점) 등의 정책은 2점(약간 부정적) 이하로 평가하였다<Table 8>.

#### 2) 보건관리자의 특성별 평가

##### (1) 보건관리자 근속년수별 평가

모든 규제완화 항목에서 근속년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근속년수가 긴 것과 규제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 허용 확대'(p<0.05), '보건관리대행 대상 사업장 확대'(p<0.05),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시정지시 등의 완화'(p<0.01), '안전·보건 관리자 등의 보수교육 면제'(p<0.01), '프레스·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검사 완화'(p<0.01),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검사의 완화'(p<0.0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p<0.01) 항목에서 근속년수와 평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9>.

##### (2) 보건관리자의 직급별 평가

보건관리자의 직급에 따른 평가는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검사의 완화'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사항

<Table 8> Opinion on the deregulation of occupational health

item	score
voluntary employment of occupational health doctor	2.15
admitting the additional job of occupational health(safety) manager	1.76
deregulate appointment of health(safety) manager	1.82
deregulate presidential decree qualification of the safety manager	2.23
having one health manager jointly in the same industrial complex	2.22
expand cover range of group occupational health agencies.	2.24
integrate the health and safety related law	2.42
deregulate prohibition of contract for harmful work	1.94
deregulate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 manager	1.87
deregulate periodic inspection of press etc.	2.06
deregulate additional inspection of facility for liquefied petroleum gas etc.	2.15
deregulate submission of harm and danger prevention plan	2.15

〈Table 9〉 Opinion on the deregulation of occupational health by length of employment

item	r	p
voluntary employment of occupational health doctor	- 0.0516	0.6192
admitting the additional job of occupational health(safety) manager	- 0.2306	0.0254*
deregulate appointment of health(safety) manager	- 0.0908	0.3895
deregulate presidential decree qualification of the safety manager	- 0.0420	0.6941
having one health manager jointly in the same industrial complex	- 0.0805	0.4507
expand cover range of group occupational health agencies.	- 0.2392	0.0210*
integrate the health and safety related law	- 0.1760	0.1030
deregulate prohibition of contract for harmful work	- 0.3294	0.0020**
deregulate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 manager	- 0.3201	0.0021**
deregulate periodic inspection of press etc.	- 0.3833	0.0004**
deregulate additional inspection of facility for liquefied petroleum gas etc.	- 0.3116	0.0046**
deregulate submission of harm and danger prevention plan	- 0.3147	0.0040**

\* p&lt;0.05 \*\* p&lt;0.01

〈Table 10〉 Opinion on the deregulation of occupational health by type of employment

item	regular	irregular	t	p
voluntary employment of occupational health doctor	2.32	2.10	1.0230	0.3089
admitting the additional job of occupational health(safety) manager	2.05	1.75	1.5598	0.1222
deregulate appointment of health(safety) manager	2.08	1.85	1.1141	0.2682
deregulate presidential decree qualification of the safety manager	2.39	2.10	1.5103	0.1345
having one health manager jointly in the same industrial complex	2.28	2.16	0.5526	0.5819
expand cover range of group occupational health agencies.	2.41	2.05	1.6077	0.1113
integrate the health and safety related law	2.56	2.35	0.9228	0.3587
deregulate prohibition of contract for harmful work	2.19	2.00	0.8135	0.4182
deregulate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 manager	2.22	1.84	1.6276	0.1071
deregulate periodic inspection of press etc.	2.21	2.12	0.4148	0.6794
deregulate additional inspection of facility for liquefied petroleum gas etc.	2.15	2.18	-0.1002	0.9204
deregulate submission of harm and danger prevention plan	2.35	2.12	1.0140	0.3136

에서 비정규직의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났다〈Table 10〉.

모든 항목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평가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관리대행 대상 사업장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규정에 대해서 학력수준이 대학재학 이상인 보건관리자는 평균 2.5점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 (3) 보건관리자의 학력별 평가

'보건관리대행 대상 사업장 확대' 규정만을 제외하고

〈Table 11〉 Opinion on the deregulation of occupational health by education

item	college	university	graduate	F	p
voluntary employment of occupational health doctor	2.30	2.41	1.70	3.00	0.0543
admitting the additional job of occupational health(safety) manager	1.91	2.14	1.70	1.68	0.1916
deregulate appointment of health(safety) manager	2.00	2.09	1.80	0.52	0.5960
deregulate presidential decree qualification of the safety manager	2.26	2.49	2.11	1.42	0.2480
having one health manager jointly in the same industrial complex	2.16	2.39	2.11	0.98	0.3778
expand cover range of group occupational health agencies.	2.04	2.58	2.50	4.60	0.0124*
integrate the health and safety related law	2.40	2.71	2.22	1.94	0.1500
deregulate prohibition of contract for harmful work	2.02	2.46	1.56	5.98	0.0037**
deregulate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 manager	2.09	2.29	1.80	1.30	0.2783
deregulate periodic inspection of press etc.	2.13	2.33	1.88	1.28	0.2841
deregulate additional inspection of facility for liquefied petroleum gas etc.	2.08	2.37	1.63	3.28	0.0425*
deregulate submission of harm and danger prevention plan	2.23	2.46	1.78	2.63	0.0779

\* p&lt;0.05 \*\* p&lt;0.01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3) 사업장 특성에 따른 평가

(1) 사업장 업종별 평가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 근무하는 보건관리자의 평가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규정 통합'(p<0.05),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검사의 완화'(p<0.05)의 경우에는 제조업 보건관리자의 평가가 각각 평균 2.68점, 2.32점으로 타 업종 보건관리자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운수·창고 및 통신업 보건관리자의 평가점수가 각각 평균 1.75점, 1.33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12).

(2) 사업장 규모별 평가

'보건관리대행 대상 사업장 확대' 규정에 대해서만 사업장 규모와 보건관리자의 평가가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규모사업장 보건관리자의 경우 보건관리대행 대상사업장이 확대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Table 13).

(3) 사업장 노조 유무별 평가

전반적으로 노조가 있는 사업장 보건관리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 허용 확대',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고용의무 완화',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시정지시 등의 완화', '안전·보건 관리자 등의 보수교육 면제' 규정에서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의 평가가 부

<Table 12> Opinion on the deregulation of occupational health by industry

item	manufaturing	electric etc	transportation etc	others	F	p
voluntary employment of occupational health doctor	2.28	2.80	1.50	2.28	1.80	0.1516
admitting the additional job of occupational health(safety) manager	1.99	2.00	1.25	2.11	1.33	0.2694
deregulate appointment of health(safety) manager	1.96	2.20	1.25	2.28	1.96	0.1252
deregulate presidential decree qualification of the safety manager	2.32	2.20	1.75	2.59	1.44	0.2376
having one health manager jointly in the same industrial complex	2.31	2.20	2.00	2.12	0.38	0.7666
expand cover range of group occupational health agencies.	2.44	2.00	2.00	2.11	1.17	0.3264
integrate the health and safety related law	2.68	2.00	1.75	2.31	2.92	0.0382*
deregulate prohibition of contract for harmful work	2.26	2.20	1.25	2.00	2.18	0.0962
deregulate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 manager	2.18	2.20	1.25	2.12	1.36	0.2609
deregulate periodic inspection of press etc.	2.29	2.00	1.75	1.93	1.30	0.2795
deregulate additional inspection of facility for liquefied petroleum gas etc.	2.32	2.20	1.33	1.80	2.81	0.0442*
deregulate submission of harm and danger prevention plan	2.41	2.20	1.75	1.93	1.93	0.1315

\* p<0.05

<Table 13> Opinion on the deregulation of occupational health by size of industry

item	r	p
voluntary employment of occupational health doctor	- 0.1682	0.0934
admitting the additional job of occupational health(safety) manager	- 0.1890	0.0610
deregulate appointment of health(safety) manager	- 0.1547	0.1303
deregulate presidential decree qualification of the safety manager	- 0.0649	0.5324
having one health manager jointly in the same industrial complex	- 0.0637	0.5395
expand cover range of group occupational health agencies.	0.2297	0.0229*
integrate the health and safety related law	- 0.1080	0.3056
deregulate prohibition of contract for harmful work	- 0.1722	0.1026
deregulate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 manager	- 0.0539	0.6042
deregulate periodic inspection of press etc.	- 0.1227	0.2577
deregulate additional inspection of facility for liquefied petroleum gas etc.	- 0.0515	0.6381
deregulate submission of harm and danger prevention plan	- 0.0870	0.4231

\* p<0.05



정적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동일 산업단지 내 공동채용 가능', '소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규정 통합',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검사의 완화'에 대해서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평가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Table 14).

#### 4. 규제완화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인지도와 평가의 상관관계

산업안전 규제완화 항목별로 보건관리자의 인지도와 평가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고용의무 완화'(p<0.001), '2종 이상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겸직 허용'(p<0.05), '안전·보건 관리자 등의 보수교육 면제'(p<0.01) 규정의 경우 인지도와 평가가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즉 규제완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경우

규제완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검사의 완화'(p<0.0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p<0.05) 규정에서는 인지도와 평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규정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Table 15).

## IV. 고 찰

정부규제(regulation)란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서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규제완화(deregulation)란 정부의 간섭과 통제 하에 놓여 있던 영역이 시장경쟁에 맡겨지게 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규제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제사회 영역이 확대됨을 의미하고, 규제완화는 민간이 주도적 역

<Table 14> Opinion on the deregulation of occupational health by union labor

item	yes	no	t	p
voluntary employment of occupational health doctor	2.17	2.47	-1.6961	0.0929
admitting the additional job of occupational health(safety) manager	1.82	2.29	-2.9691	0.0037**
deregulate appointment of health(safety) manager	1.85	2.29	-2.6216	0.0101*
deregulate presidential decree qualification of the safety manager	2.28	2.44	-0.9753	0.3319
having one health manager jointly in the same industrial complex	2.34	2.09	1.4613	0.1472
expand cover range of group occupational health agencies.	2.27	2.47	-1.0972	0.2752
integrate the health and safety related law	2.54	2.53	0.0625	0.9503
deregulate prohibition of contract for harmful work	2.03	2.41	-2.1446	0.0346*
deregulate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 manager	1.92	2.53	-3.3270	0.0012**
deregulate periodic inspection of press etc.	2.11	2.33	-1.2766	0.2051
deregulate additional inspection of facility for liquefied petroleum gas etc.	2.23	2.12	0.6445	0.5493
deregulate submission of harm and danger prevention plan	2.21	2.41	-1.0851	0.2809

\* p<0.05 \*\* p<0.01

<Table 15> Correlation between awareness and opinion

item	r	p
voluntary employment of occupational health doctor	- 0.1266	0.2025
admitting the additional job of occupational health(safety) manager	- 0.1616	0.1047
deregulate appointment of health(safety) manager	- 0.3855	0.0001***
deregulate presidential decree qualification of the safety manager	- 0.2039	0.0440*
having one health manager jointly in the same industrial complex	- 0.0458	0.6540
expand cover range of group occupational health agencies.	- 0.0433	0.6672
integrate the health and safety related law	- 0.0227	0.8274
deregulate prohibition of contract for harmful work	0.0687	0.5104
deregulate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 manager	- 0.2894	0.0039**
deregulate periodic inspection of press etc.	0.1484	0.1626
deregulate additional inspection of facility for liquefied petroleum gas etc.	0.2253	0.0338*
deregulate submission of harm and danger prevention plan	0.2517	0.0167*

\* p<0.05 \*\* p<0.01 \*\*\* p<0.001

할을 하는 영역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해당 영역을 지배하는 논리가 시장에서 정부로 바뀌게 되는 것을 정부규제라 하고, 역으로 정부에서 시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규제완화라고 부른다(Choi, 2001).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분야 규제완화의 전제는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시장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분야에 시장경쟁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는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은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게 하고 노동의 질과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투자제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생산층 근로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가 공급되지 않으면 노동불능상태에 빠져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는 소비적인 요소와 더불어 투자적인 요소가 혼재해 있는 특성이 있다. 또한 보건의료의 특성은 일반국민들이 보건의료의 질과 전문성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의 구매자인 소비자와 제공자인 의료인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Moon et al, 2000).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시장경쟁이 존재할 수 없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

정부규제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와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의 두가지로 구분한다. 경제적 규제란 시장경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진입, 가격, 생산량, 품질, 공급대상 및 조건 등)에 대한 규제이고, 사회적 규제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 기업의 사회적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제(환경오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위협, 소비자권익의 침해 등)이다(Choi, 2001).

환경규제, 작업장 안전규제, 고용에 있어서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등과 같은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accountability)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기업활동이 인간의 보건과 생명, 삶의 질, 기본권 등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업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결과에 대한 관심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것은 산업화에 따라 소득수준이 향상하고 소득수준의 향상은 보다 나은 생활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사회적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도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공평하게 사회적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추진이 미흡했었다. 19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제일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할 때는 경제성장이라는 대의에 밀려 근로자의 건강이 늘 뒷전에 밀려 왔었다. 그 이후 1988년 15살 문송면 소년의 수은중독으로 인한 사망과 1990년대 들어서 원전레이온의 직업병 발병 등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가 그나마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88년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이제 다시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각종 산업안전보건 규제를 완화하여 근로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면 굳이 법적으로 여러 제도를 만들어 세부적인 조항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법적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 최소한으로나마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는 규제완화 이후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규제없이 산업안전보건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하겠지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할 때는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규제완화로 인해 그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게 되는 당사자인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하겠으며, 무조건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규제가 형성된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여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중요시하는 기본 토대 위에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에 대한 올바른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무하는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0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107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인지도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산업보건의 자율선임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안전·보건관리자의 보수교육 면제, 보건관리대행 대상사업장 확대 등에 대한 인지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관련된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에 대한 중복검사 완화, 소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규정 통합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보건관리자의 특성에 따른 인지도를 살펴보면, 보건관리자의 근속년수가 길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규제완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규모가 클수록, 사업장에 노조가 있을수록 인지도가 높았고, 업종에서는 전기·가스 및 상수도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인지도가 높았다.

#### 2)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평가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건관리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허용 확대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다. 보건관리자의 근속년수가 길수록, 보건관리자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보건관리자가 비정규직인 경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다.

#### 3)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인지도와 평가와의 상관관계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인지도와 평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규제완화정책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제 언

본 연구 결과 정부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규제완화로 인해 그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게 되는 당사자인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불필요한 규제는 물론 완화되어야 하겠지만,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규제는 사회적 규제이므로 타분야의 경제적 규제와 동일시하여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무조건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규제가 형성된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여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 References

- Ministry of Labor. (2001). Analysis of Occupational Accident.
- Moon, O. R., et al. (2000). Medical Insurance. Shinkwang Press.
- Song, J. S., Won, J. U., Son, M. S., Cha, B. S., Roh, J. H. (1997). Study of requirements and conditions to be improved for voluntary occupational health program worksite. The Korean Journal of Preve Medicine, 30(4), 840-851.
- Rhee, K. Y., Park, H. K. (1999). The strategy for flexibility and worker's health. Health and Social Science, 5, 143-162.
- Lee, K. H., Park, D. H., Park, Y. S., Kim, E. C. (1999). An analysis of the impac deregulation on safety and health activiti work. Journal of Industrial Safety & H Research Institute, 1, 24-35.
- Jung, H. S., Kim, S. Y., Lee, B. I. (1999). A study on the occupational health personnel, department and job change before and after economic crisi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8(2), 176-192.
- Choi, B. S. (1992). Government Regulation. Bobmunsa.

- Abstract -

## Awareness and Opinion of Occupational Health Manager on the Deregul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ark, Soo Man\* · Jung, Hye Sun\*\**

*Lee, Bok 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awareness and opinion of occupational health managers on the deregul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h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constructed questionnaires from December 1 to December 20, 2000.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07 respon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highest awareness score was voluntary employment for occupational health doctor. High awareness score was exemption from obligatory education for occupational health manager, and expansion cover range of group occupational health agencies.

2. Most of the occupational health managers had a negative opinion on the deregul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particular, one of the most negative opinions was no restrictions on occupational health managers holding other jobs.
3. The correlation between awareness and opinion on the deregul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as negative, showing that the negative opinion on the deregul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ended to increases as awareness increases.

Key words : Occupational health, Deregulation, Occupational health manager

---

\*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Graduate School of Occupational Health, Catholic University

\*\*\* Ministry of Labor